

대한전문건설협회, 불공정하도급 상담 및 신고기구

□ 상담 기구

[1]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(대한전문건설협회)

- (주요업무)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가 건설관련법령,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신청 등 전문적인 상담과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원스톱으로 지원
- (신청방법) 협회 홈페이지에서 불공정하도급 상담신청서(다운로드) 작성 후, 이메일(clean@kosca.or.kr) 상담 신청(면담일정 배정)
- (상담문의) 협회 공정거래정책부(02-3284-1087)

[2] 법률상담센터(대한전문건설협회-전문건설공제조합)

- (주요업무) 협회-조합 공동으로 회원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법률, 노무, 세무·회계 업무 및 불공정 하도급 피해 등의 고충을 신속·정확하게 상담하고 지원
- (상담문의) 유선상담(02-3284-3000), 방문상담 신청(신청서 FAX제출)

□ 신고 기구

[1]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구)

- (주요업무)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자의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정 진행

- (신청방법) 협의회 홈페이지(<http://csdmc.or.kr/>) 접속 ‘신고서 다운로드’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우편(또는 방문)으로 발송
- (신고문의)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2-549-2105/6

[2] 익명제보센터(공정거래위원회)

- (주요업무) 하도급대금미지급, 거래 상 지위 남용, 불공정거래 행위 등 원도급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원노출 없이 익명 신고
- (신고방법) 공정위 홈페이지 익명제보 등록
(<http://www.ftc.go.kr/www/unfairTradeAnyRptWrite.do?key=475&gubun=1>)

[3]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(국토교통부)

- (주요업무) 불법하도급(동일업종, 재하도급), 이중계약, 무면허 하도급, 저가하도급(적정성심사) 등 건산법 위반행위의 조사처리 및 행정처분
- (신고방법) 협회 담당자와 상담 후 해당 국토관리청으로 신고 안내
(02-3284-1087, 신고서 다운로드 <http://www.kosca.or.kr/C0/C010402.asp?area=00>)

[4] 불공정거래 신고센터(중소벤처기업부)

- (주요업무) 하도급대금 미지급, 부당특약, 부당감액,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법, 상생법 위반 등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 해소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신속한 피해구제 상담
- (신고방법) 협회 담당자와 상담 후 불공정거래 상담신청
(02-3284-1087, <https://poll.mss.go.kr/policy/policyCounForm.do>)